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6. 26. 선고 2020노 60,2020감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 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절도,건조물침입,치료감호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전주)2020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절도,

건조물침입

(전주)2020감노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A

청구인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박기웅, 김현경, 이지은, 유희경(기소), 강재하(치료감호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호(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3. 26. 선고 2019고합150, 2019고합151(병합),

2019고합152(병합), 2019고합153(병합), 2019고합154(병합), 2019고합

155(병합), 2019고합156(병합), 2019고합157(병합), 2020고합10(병합), 2019

감고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이수 40시간, 정보의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잘못이다.

##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말들 중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들도 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하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 한다) 범행들은 다수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하였는바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들로 이미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3.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감호소가 아니라 자택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고는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1998.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들을 저지른 점, 2 피고인은 심지어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3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변태성욕장애, 전화음란증 등의 진단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으면 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감정의의 감정의견이 있는 점, 4 피고인의 전력과 현재 상태에 비추어, 가족의 보살핌만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들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받지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4. 결론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이영창 정총령